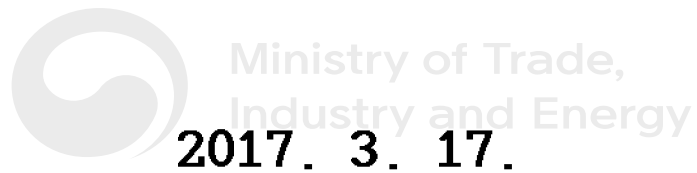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30호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3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5호, 2016.07.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1. 개정취지

소비자에게 계란 생산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자 명칭으로 표시토록 하고 축산물 표시시점에 대한 기준 제시 등 규정 운영 명확화 및 영업자 규제의 합리적 개선 과제로 수입 축산물 제품의 내용량 표시방법 개선, 알가공장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의 난각표시 생략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본 고시와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최근 개정 추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계란 난각 표시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자 명칭 표시토록 함 (안 별 표 1. 2. 가. 2). 가), 나), 3). 다), 4). 다))

- 1) 현행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표시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부적합 계란 발생시 생산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어려움

- 2) 계란 난각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등록 사업장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나. 원활한 규정 운영을 위한 표시 기준 명확화** (안 제3조제6호 신설, 별표 1. 1. 사. 6), 2. 가. 6)신설, 다. 4))

- 1) “축산물 표시” 시점에 대해 최종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 표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식용란의 경우는 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시하도록 함
- 2) 식육의 종류에 품종명이 포함되는지 규정상 불명확하여 품종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을 경우 함량 표시 여부를 두고 영업자 표시를 위하여 식육의 종류에 품종명도 포함되도록 규정 명확화
- 3)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표시방법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 명문화

**다. 영업자 규제의 합리적 개선** (안 제6조제5호가목2)가) 단서신설, 별표 1.1.바.3), 별표1.2.가.2).나) 단서신설)

- 1) 포장육의 경우 제품명 또는 원재료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식육의 종류가 표시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2) 포장육, 수입하는 식육외에도 내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주표시 장소에 내용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시할 수

있도록 개선

- 3) 알가공장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의 경우는 생산·판매이력을 영업자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난각에 사업장명칭 표시 생략토록 허용

라.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 등 (안 제2조제5호, 6호, 제5조제11호 신설, 제6조제10호 신설, 별표 1. 1. 가. 3). 다), 바. 3), 사. 1). 라), 사. 2). 가), 아), 사) 7) 신설, 별표 1. 2. 가. 2) 나), 다. 4), 라. 19) 및 20) 신설)

- 1)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읽는데 도안, 그림 사진 등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본원칙 신설
- 2) 유통기한, 제조연월일의 영문명 예시를 규정에 명확히 하여 수입담당 공무원 및 사업자인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시 신설
- 3) 제한적 식품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주의 사항에 일일섭취량 및 1회 섭취량 표시과 함량 표시를 하도록 규정 신설
- 4) 복합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명칭(제품명) 뿐만 아니라 식품의 유형으로도 표시 가능토록 개선
- 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구 수정 및 예시 신설

### 3.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5, 3222, 팩스 043-719-3200, 전자우편: tjwl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75호, 2016.07.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표시대상)”을 “(표시대상 등)”으로 하고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축산물과 표시시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최종공정이 완료되어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포장이 완료된 시점에 축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용란의 경우에는 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3호 중 “다만, 내포장의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을 “다만, 서로 다른 유통기한이 표시된 각각의 내용물의 유통기한을 하나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맨 하단에 “(세트포장제품도 동일

하게 적용한다)”를 추가한다.

제5조제6호 중 “정보표시면에 제4조 및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표시사항만을”을 “정보표시면에 제4조 및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표시(타법 포함)사항만을”으로 한다.

제5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읽는데 있어 도안, 그림, 사진, 문자, 색상 등에 의해 방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제5호가목 중 2). 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축산물의 제품명 또는 원재료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표시

제8조제3호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수입축산물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의 영문표시 및 약자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조연월일 예시) : Date of Manufacture, Manufacturing Date, MFG, M, PRO(P), PROD, PRD 등

유통기한 예시): Expiration on date, Sell by date, EXP, E 등

다만, 위의 예시에 있지 않은 영문표시 및 약자가 수출국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나타낼 때에는 그 날짜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으로 볼 수 있다.

제11조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를 “제10조를 제외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로 한다.

별표 1. 1. 가. 3). 다) 중 “합성착향료”를 각각 “합성향료”로 한다

별표 1. 1. 다. 1). 나)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을 각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으로 한다

별표 1. 1. 바.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등 내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주표시 장소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표시위치(표시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별표 1. 1. 사. 1). 나) 중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뒤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를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그 뒤에 괄호를 하고”로 한다.

별표 1. 1. 사. 2). 가) 중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을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만을”로 한다.

별표 1. 1. 사. 2). 아)를 다음과 같이 하고 “예시”를 신설한다

아) 첨가물 중 천연향료나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천연향료, 천연향료(바닐라향), 천연향료(바닐라추출물), 합



성향료, 합성향료(딸기향)

별표 1. 1. 사. 6) 중 “식육을 원재료로 사용시”를 “식육만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재료가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혼합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100% 사용시 : 닭고기(기계발골육)

원재료로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사용시 : 닭고기  
(정육 80%, 기계발골육 20%)

별표 1. 1. 사.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마씨(아미 시유 제각)를 원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해당 식품에 그 함량(중량)을 주, 부,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1. 자. 9)의 단서조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유통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별표 1. 2. 가. 2). 가) 중 “생산자명”을 각각 “사업장 명칭”으로 한다.

별표 1. 2. 가. 2). 나) 중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를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의 사업장 명칭을 [도4]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로 하고 “다만,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뒤에 괄호를 하고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기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호는 [도4]에 따라 표시하여

야 한다”를 “다만, 알가공장에 원료알로 판매되는 계란의 경우에는 난각에 사업장 명칭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2. 가. 3). 다) 중 “생산자명”을 “사업장 명칭”으로 한다.

별표 1. 2. 가. 4). 다) 중 “생산자명”을 “사업장 명칭”으로 한다.

별표 1. 2. 가. 4). 다). (1) 중 “생산자명은 생산농장의 소유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명 대신 생산농장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명 또는 생산농장명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를 “사업장 명칭은 축산법 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가축 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명칭을 말하며, 사업장 명칭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2. 가.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원재료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용량,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명의 경우(수입계란 제외) 재포장에 따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2. 다. 4) 중 “식육의 종류”를 각각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2. 라. 19) 및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조업체가 유제품 중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후 유통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지(냉동제품

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해동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주표시면에는 “해동된 냉장(실온)제품”이라는 표시를 “냉동제품”이라고 표시된 근처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0)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도 4] 제목과 1. 중 “생산자명 기호”를 각각 “사업장 명칭”으로 한다.

[도 4] 1. 가. 중 “생산자명의 영문약자(영문 3자리) 또는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숫자 3자리)를 포함하여 총 5자리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서울 소재 홍길동 “IGD”를 “사업장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경남 소재에 등록되어 있는 계림농장일 경우 : 15계림농장”으로 한다.

[도 4] 1. 나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축산법 제35조에 따라 계란의 등급판정을 받아 난각에 표시한 경우에는 사업장명칭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포장단위에 사업장 명칭은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2017.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

6호의 개정규정, [별표 1] 2. 가. 전체 개정규정, [도4]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 2. 다. 19) 및 20)의 개정규정은 2017.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축산물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축산물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축산물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5.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3조(표시대상 등) 표시대상 축산물과 <u>표시시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최종공정이 완료되어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포장</u> <u>이 완료된 시점에 축산물의 표시를</u> <u>하여야 한다. 다만, 식용란의 경우에는</u> <u>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시</u> <u>하여야 한다.</u></p>
<p>제5조(표시방법) 축산물의 표시방법은 <u>다음 각호와 같다.</u></p> <p>1. ~ 2. (생 략)</p> <p>3. ----- ----- 있다. <u>다만, 내</u> <u>포장의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경우</u> <u>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최소판</u> <u>매단위에 표시하여야 한다.</u></p> <p>4. ~ 5. (생 략)</p> <p>6. ----- ----- 있다. 이 경우 정 보표시면에 제4조 및 제5조제4호나 목에 따른 <u>표시사항만을</u> 표시하여 야 한다.</p> <p>7. ~ 10. (생 략)</p>	<p>제5조(표시방법)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있다. <u>다만, 서로 다</u> <u>른 유통기한이 표시된 각각의 내용</u> <u>물의 유통기한을 하나로 표시하고</u> <u>자 할 경우에는 -----</u> <u>-----.(세트포장제품</u> <u>도 동일하게 적용한다)</u></p> <p>4. ~ 5. (현행과 같음)</p> <p>6. ----- ----- 있다. 이 경우 정 보표시면에 제4조 및 제5조제4호나 목에 따른 <u>표시(타법포함)사항만을</u> <u>표시하여야 한다.</u></p> <p>7. ~ 10. (현행과 같음)</p>

<신 설>

제6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3조에 따른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2) 표시방법

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이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를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나. (생 략)

6. ~ 9. (생 략)

<신 설>

11.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읽는데 있어 도안, 그림, 사진, 문자, 색상 등에 의해 방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

2) -----

가)-----

----- . 다만,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축산물의 제품명 또는 원재료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현행과 같음)

6. ~ 9. (현행과 같음)

10.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 1. ~ 2. (생략)
- 3. 수입축산물에 대한 표시방법
- 가. ~ 다. (생략)

<신설>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 1. 축산물의 일반기준
- 가. 제품명
- 3) 가) ~ 나) (생략)
- 다) “맛”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

등의 표시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 1. ~ 2. (생략)
- 3. 수입축산물에 대한 표시방법
- 가. ~ 다. (생략)

라. 수입축산물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의 영문표시 및 약자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조연월일 예시):Date of Manufacture, Manufacturing Date, MFG, M, PRO(P), PROD, PRD 등

유통기한 예시):Expiration on date, Sell by date, EXP, E 등

다만, 위의 예시에 있지 않은 영문표시 및 약자가 수출국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나타낼 때에는 그 날짜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으로 볼 수 있다.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

-----따라 제10조를 제외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 1. 축산물의 일반기준
- 가. 제품명
- 3) 가) ~ 나) (현행과 같음)
- 다) “맛”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

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첨가(함유)”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딸기향우유(합성딸기향 첨가)

나. (생략)

다.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1) 업종별 ----- 같다.

가) (생략)

나) 축산물수입판매업 : -----  
----- 해당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의 명칭(상호) -----  
----- 있다.

마. (생략)

바. 내용량

1) ~ 2) (생략)

3)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에 있어 주표시 장소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생략)

사. 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

1) 표시방법

가) ~ 다) (생략)

라)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뒤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

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향료첨가(함유)“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딸기향우유(합성딸기향 첨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1) 업종별 ----- 같다.

가) (생략)

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  
----- 해당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장의 명칭(상호)--  
----- 있다.

마. (현행과 같음)

바. 내용량

1) ~ 2) (현행과 같음)

3)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등 내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주표시 장소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사.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그 뒤에 괄호를



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5%미만인 경우와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나) ~ 사) (생략)

아) 첨가물 중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예시 : 합성착향료(○○향)]할 수 있다.

3) ~ 5) (생략)

6) 기계적 회수 식육을 원재료로 사용시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

하고 -----  
-----  
-----  
-----  
-----  
-----  
-----  
-----

2) -----  
-----

가)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5%미만인 경우와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다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첨가물 중 천연향료나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천연향료, 천연향료(바닐라향), 천연향료(바닐라추출물), 합성향료, 합성향료(딸기향)

3) ~ 5) (현행과 같음)

6) 기계적 회수 식육만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재료명

를 하고 '기계발골육'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 닭고기(기계발골육)

다음에 괄호를 하고 '기계발골육'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가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100% 사용시 : 닭고기(기계발골육)  
원재료로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사용시 : 닭고기 (정육 80%, 기계발골육 20%)

7)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식품에 그 함량(중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자. 기타 표시 사항

- 1) ~ 8) (생략)
- 9) 축산물이 -----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유통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축산물별 개별기준

가. 식용란

- 1) (생략)
- 2) 표시사항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

자. 기타 표시사항

- 1) ~ 8) (생략)
- 9) 축산물이 -----

한다. <단서규정 삭제>

2. 축산물별 개별기준

가. -----

- 1) (현행과 같음)
- 2) -----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사업장 명칭, 판매자명 및 소

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난각에 생산자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명표시란에 “난각에 별도표시”라고 표시할 수 있다.

나)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산란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년○○월○○일”, “○○.○○.○○”, “○○○○년○○월○○일”, “○○○○.○○.○○”, “○○월○○일” 또는 “○○○○”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뒤에 괄호를 하고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기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호는 [도 4]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3) 표시방법

가) ~ 나) (생략)

다) (1) ~ (2) (생략)

(3)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기타표시사항 : 6포인트

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난각에 사업장 명칭을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표시란에 “난각에 별도표시”라고 표시할 수 있다.

나) -----  
-----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의 사업장 명칭을 [도4]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  
-----  
-----  
-----  
-----  
----- 다만, 알가공장에 원료알로 판매되는 계란의 경우에는 난각에 사업장 명칭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3) 표시방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업장 명칭, 판매자명 및 소재지, 기타표시사항 : 6포

트 이상

4) 2)에 따른 세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생략)

다)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1) 생산자명은 생산농장의 소유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명 대신 생산농장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명 또는 생산농장명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5) (생략)

6) 신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1) ~ 3) (생략)

4)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대로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

인트 이상

4) 2)에 따른 세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업장 명칭, 판매자명 및 소재지

(1) 사업장 명칭은 축산법 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가축

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명칭을 말하며, 사업장 명칭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6)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용량,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명의 경우(수입계란 제외)에는 재포장에 따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

1) ~ 3) (현행과 같음)

4)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

가) -----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

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가공품

- 1) ~ 18) (생략)
- 19) 신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

나) -----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

-----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

다. -----

-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조업체가 유제품 중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조년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지(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해동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주표시면에는 “해동된 냉장(실온)제품”이라는 표시를 “냉동제품” 이라고 표시된 근처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

하여야 한다.

- 20)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도 1] ~ [도 3] (현행과 같음)

[도 4] 계란 난각의 사업장 명칭 표시방법

- 1. 사업장 명칭의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가.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숫자 2자리)와 함께 사업장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경남 소재에 등록되어 있는 계란농장일 경우 : 15계림농장

나. 시·도별 부호

시·도	부호	시·도	부호
서울특별시	01	강 원 도	09
부산광역시	02	충청북도	10
대구광역시	03	충청남도	11
인천광역시	04	전라북도	12
광주광역시	05	전라남도	13
대전광역시	06	경상북도	14
울산광역시	07	경상남도	15
경 기 도	08	제주특별자치도	16
		세종특별자치시	17

\* 다만, 축산법 제35조에 따라 계란의 등급 판정을 받아 난각에 표시한 경우에는 사업장명칭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도 1] ~ [도 3] (생략)

[도 4]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기호 표시방법

- 1. 생산자명의 기호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가.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숫자 2자리)와 함께 생산자명의 영문약자(영문 3자리) 또는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숫자 3자리)를 포함하여 총 5자리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서울 소재의 계란농장일 경우 : 01HGD

나. 시·도별 부호

시·도	부호	시·도	부호
서울특별시	01	강 원 도	09
부산광역시	02	충청북도	10
대구광역시	03	충청남도	11
인천광역시	04	전라북도	12
광주광역시	05	전라남도	13
대전광역시	06	경상북도	14
울산광역시	07	경상남도	15
경 기 도	08	제주특별자치도	16
		세종특별자치시	17